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77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30.

발 의 자 : 박 정 · 유동수 · 김태선
서왕진 · 권철승 · 이학영
김원이 · 이춘석 · 김병주
김영환 · 송석준 · 김성원
남인순 · 김현정 · 전현희
안호영 · 고민정 · 조계원
허 영 · 정혜경 · 김남희
박홍배 · 허종식 · 곽상언
의원(2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,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. 그러나 전력망 구축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재원 조달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이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선납제도를 도입하여, 전기사용자가 일정 기간의 요금을 선납할 경우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,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통해 확보한 선수금을 전력망 확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 선납에 따른 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, 전기사용자에게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정위원이 대표발의한 「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77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전단 중 “전기요금”을 “전기요금, 전기요금의 선납에 따른 할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